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63

발의연월일: 2021. 1. 5.

발 의 자:노웅래・김승원・고용진

김승남 · 홍성국 · 전재수

이병훈 • 권칠승 • 인재근

소병훈 · 안호영 · 양경숙

정필모 · 윤미향 · 기동민

김수흥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피해 신고 건수는 총 24,604건으로 2011년 6,058건에 비해 4배이상 증가하였음.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임.

이에 아동학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아동학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아동보호 이행실태 등에 대한 법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그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53조 및 안 제1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5조 중 "3년"을 "6년"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 범죄의 피의자가 아동학대치사 또는 아동학대중상해의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	제4조(아동학대치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	
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u>5년</u> 이상의 징역에 처한	<u>10년</u>
다.	<u>.</u>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	
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	
에 이르게 한 때에는 <u>3년</u> 이상	<u>6년</u>
의 징역에 처한다.	
<u><신 설></u>	제15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
	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피의자가 아동
	학대치사 또는 아동학대중상해
	의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관할 지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수있다.

②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 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 찰청 검사에게 <u>통보할 수 있다</u>.

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u>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
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
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u>के</u> ले ः
한다.
②
<u>통보하여야 한다</u> .